#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479

발의연월일: 2022. 9. 22.

발 의 자: 송재호 · 우원식 · 위성곤

김한규 · 강준현 · 윤재갑

이용우 · 김승원 · 임호선

김수흥 • 이해식 • 김회재

신정훈 · 강민정 · 김영배

문진석 · 김영주 · 황운하

이원택 의원(1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선 농어업 부문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농지 취득세 면제나 농어업인 융자 시 제공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 록면허세 감면 등 다양한 특례 제도를 일몰제하에 운영하고 있음.

한편, 최근 비료·농약·사료 등 영농자재의 가격 상승, 쌀값 하락,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 가축질병 등으로 인해 국내 농어업의 경제적 상황이 더욱 위축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몰제 만료에 따른 농어업 부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축소된다면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경제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 우려됨.

따라서 2022년 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어업 부문 지방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 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민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7조).

## 주요내용

- 가.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교환·분합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8조제2항).
- 나. 농·수협, 산림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 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 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 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 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 라. 농·수협,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67조).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7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혂 개 정 했 아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 (생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농어촌정비법」이나 「한 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 법」에 따라 교환・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 분합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 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 2027년 12월 31일 ----면제한다. 다만, 한국농어촌공 사가 교환・분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 관련 감면 등) ① -----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 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 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 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 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 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營 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5. (생략)

#### ② (생략)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202713 12 <b>9</b> ] 216]
<u>2027년 12월 31일</u>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વાર વર⁄ છ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 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 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 00분의 50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② (생략)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 전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 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지방세법」 제 1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 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 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로 한다.

<u>2027년 12월</u>
<u>31일</u>
② (현행과 같음)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
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202
<u>202</u>
7년 12월 31일